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

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박지혜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계약 주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제2항 단서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법률안의 체계·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윤 상 열)